

- 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차 례

- 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
- ②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

1]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3747
------	-------------

1. 제안경위

- 본 안건은 2024년 6월 7일 최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747호로 접수,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-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안건 처리기한 변경을 통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주민의견 청취 (안 제8조)
 - 조문 수정
-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(안 제19조)
 - 근거 법령 추가
- 안건 처리기한 변경(안 제66조의2)
 - 45일 이내 심의·의결 → 30일 이내 심의·의결

4. 관련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3조, 제112조
-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11조

5. 사전절차 이행

-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4. 5. 23. ~ 6. 3.
 - 결 과 : 의견 없음

6. 검토보고

- 본 개정 조례안은
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
안건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출됨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변경
하고, 안 제19조제2호다목은 「양식산업발전법」 근거법령을 추가하여
‘양식업에 사용하는 비닐하우스’의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것으로
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 적용 시 해당근거나 양식업의 범위에
대한 혼동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.

- 안 제66조의2제1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내용으로 처리기한을 ‘45일 이내’에서 ‘30일 이내’로 축소하는 것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4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의 신속한 처리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시민만족도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<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>

제114조(운영세칙)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,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한다.

1. 위원의 자격 및 임명·위촉·해촉(解囑) 기준
2. 회의 소집 방법,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·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
4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
5.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
6.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
7.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3748
------	-------------

1. 제안경위

- 본 안건은 2024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48호로 접수,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충주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및 추가 할인 근거를 마련하고,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충주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충주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(안 제4조제2항)
- 충주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근거 마련(안 제12조제3항)
-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삭제

4. 관련법령

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15조

5. 사전절차 이행

○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4. 4. 19. ~ 5. 9.
- 결 과 : 의견 없음

6. 검토보고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별도 법령에 기재된 사항을 정비하고, 지자체장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·판매 등 운영에 관한 재량을 넓히고자 제출됨.

○ 제7조의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「소득세법」 제162조의3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, 소득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사안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.

○ 안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은 상위법인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주사랑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, 재난이나 경제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.

<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>

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

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.

< 소득세법 >

제162조의3(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·발급의무 등)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업종·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(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)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.

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68조, 「법인세법」 제111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, 「법인세법」 제121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